

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김규남,  
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지, 남창진,  
도문열, 문성호, 박성연,  
박영한, 박철성, 박환희,  
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 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 
윤기섭, 이봉준, 이영실,  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 
이희원, 임만균, 전병주,  
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,  
최진혁, 한 신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43명)

## 1. 제안이유

-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짧아 많은 행정력 소모와 함께 수요자들의 불편 초래
  - 명부 구성을 위한 공고 이후 평균 2천여 명이 신청을 하고 있으며, 신청에 따른 유선 문의 대응 및 제출서류 적합 여부 확인 등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음
  - 명부 구성을 위해 평균 약 4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나, 명부의 유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부 구성 8개월여 이후 다음 기수의 명부 구성 공고를 준비하여 많은 행정력 소모
  - 별도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매해 명부 구성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접수로 수요자(공사감리자)들의 불편 초래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 구성 기간을 연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「건축법 시행령」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연”을 “2년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의2(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)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</p> <p>1.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~ ⑩ (생략)</p>	<p>제18조의2(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 <u>2년에</u>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⑩ (현행과 같음)</p>